

종합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2025. 10.

□ 처분요구일람표

1. 금고 운영 및 지정 절차 부적정 (주의)	1
2. 공기관수탁 사업 정산금액 반환 미이행 (시정)	4
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시정)	6
4. 2023년도 ◎◎◎ □□ □□ □□□ 지원 위탁사업 부적정 (주의)	8
5.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5
6. 지출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18
7. 회계관계직원 지정 부적정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업무 소홀 (통보)	20
8. 인사운영 부적정 (주의)	23
9.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26
10. 복무관리 부적정 (시정)	30
11. 취업규칙 등 규정관리 미흡 (시정)	34
12.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 부적정 (시정)	37
13.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부적정 (주의)	40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부적정 (시정)	44
15. 공사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주의)	46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금고 운영 및 지정 절차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 ○ ○ ○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2025. 7. 31. 현재 보통예금 616개 계좌 약 588억 원¹⁾, 정기예금 5개 계좌 6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예산 및 회계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진흥원의 예산·결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1) 625개 계좌 중 퇴직금, 기금, 세입세출외현금, BC카드 계좌를 제외한 보통예금 총액 58,787,580,786원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2.금고지정 방법에 따르면 금고지정은 경쟁 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4.금고의 지정절차에 따르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이후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거치고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세입계좌와 세출계좌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 지정 시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경쟁의 방법으로 이행하고 지정 과정에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세입계좌와 세출계좌를 분리하지 않고 1개의 계좌에서 수입과 지출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고 지정 시 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과 ☆☆☆를 금고로 지정하여 보통예금 588억 원과 정기예금 60억 원을 예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수익의 직접 사용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계좌를 운용하게 되었으며, 임의 금고 지정으로 인해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한 다른 출연기관(경상북도 ◇◇◇◇◇)의 금고 이자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표]와 같이 보통예금 이자율 0.5%~0.59%의 차이, 정기예금 이자율 0.6% 차이로 합계 192,500천 원의 이자차액²⁾이 발생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었다.

2) ◇◇◇◇◇과 경제진흥원 간 이자율에 따른 이자금액 차액의 총 합계 (2025.1월~7월까지 7개월 분)

[표] 경제진흥원과 공개모집 타 출연기관(◇◇◇◇◇)의 비교 이자율

(단위 : 원)

기관명	운영금고	보통예금(588억)		정기예금(60억)		비 고
		이자율	이자금액	이자율	이자금액	
차 액	192,500,000		171,500,000		21,000,000	25.7.31.기준
경제진흥원	◎◎◎	0.1%	34,300,000	2.60%	91,000,000	
	☆☆☆	0.01%	3,430,000	2.60%		
◇◇◇◇◇	☆☆☆	0.6%	205,800,000	3.20%	112,000,000	공개모집

※ 2025.7.31. 보통예금 운영잔고 588억 기준, 정기예금 계좌 5개 60억 기준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앞으로 「지방회계법」을 준수하여 세입과 세출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금고 지정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기관수탁 사업 정산금액 반환 미이행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탁사업 업무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수탁사업 책임자는 협약한 기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사업비 집행에 대해 위탁기관에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대행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상북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수탁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을 이행하고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은 위탁기관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표]와 같이 ‘2019년 □□□□□ □□□□□ □□□□□ 사업’ 등 5개 사업을 정산완료 하였음에도 사업비 집행잔액 2,736,414천 원을 위탁 기관에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 ○○○○○○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2025. 8. 29. 감사일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정산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잔액 633,352천 원도 반납하지 않고 있어 위탁기관으로 세입처리 되어야 할 금액 3,369,766천 원이 미납된 채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수탁사업 정산금액 반환 및 정산 미이행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연도	종료연도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잔액
합 계			7개 사업	41,876,451	3,369,766
미반환	소 계		5개 사업	32,889,400	2,736,414
	2019	2020	□□□□□ □□□□□ □□□□□	105,000	33,804
	2020	2021	◇◇◇◇◇ ◇◇◇◇◇ 지원	29,328,400	2,354,350
	2021	2022	☆☆☆☆☆☆☆☆☆☆	1,352,000	176,123
	2022	2023	▲▲▲▲▲▲▲▲▲▲	1,352,000	98,671
	2022	2022	▽▽▽▽▽▽▽▽▽▽	752,000	73,466
미정산	소 계		2개 사업	8,987,051	633,352
	2023	2024	○○○○○○○○○ ○○○○○○ 지원사업	8,135,050	345,224
	2023	2024	◆◆◆◆◆ ◆◆◆◆◆ 지원사업	852,001	288,128

※ 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 ① ‘○○○○○○○○○ ○○○○○○ 지원사업’ 등 2개 수탁사업에 대해 정산을 이행하고 ‘□□□□□ □□□□□ □□□□□’ 등 5개 사업을 포함하여 미반납된 집행 잔액 3,369,766천 원 및 이자를 위탁기관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관련자 AAA을 훈계(진흥원 규정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 ○ ○ ○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예산 및 회계 규정」 제61조에 따라 진흥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보관금, 잡종금 등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V.예산 집행기준 ⑤ 기타에 따르면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진흥원 「예산 및 회계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진흥원의 예산·결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 및 귀속 예정일 등을 미리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존하고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때에 진흥원 금고로 세입 편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아래 [표]과 같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계좌에 총 101,606천 원(2025. 7. 31.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4대 보험 등 7월 급여 공제액 81,266천 원, 강사수당 등 원천세 23건 3,788천 원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고는 있으나 나머지 16,552천 원에 대해서는 장기 보관 중으로 추정될 뿐 언제 수납되었는지 등 출처를 알 수가 없어 반환일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현황

(단위 : 원)

일 자	적 요	금 액
총 계		101,605,674
2025. 07. 18	2025년 7월 급여 공제액(4대보험 등)	81,265,760
2025. 7. 3. ~ 7. 31.	강사수당, 심사수당 원천세 23건	3,787,750
-	출처미상	16,552,164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부를 비치·작성하시기 바라며, 장기간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2023년도 ○○○○ □□ □□ □□□ 지원 위탁사업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와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도 ☆☆☆☆ ☆☆ ☆☆☆☆ ☆☆☆☆³⁾」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표 1]과 같이 2023 ○○○○ □□ □□ □□□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2023 ○○○○ □□ □□ □□□' 위탁사업

사업명	위탁기간	사업비	사업비 집행계획
2023 ○○○○ □□ □□ □□□	2023. 4. 1. ~ 2023. 12. 31.	161백만원 ⁴⁾	• 항공비 등 161백만원 - 12개사 × 1식 = 161백만원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에 2023. 4. 5. 송부한 사업 신청서 일부를 추출

1. 과업감소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거래

3) 2023. 4. 5.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360백만 원으로 12개사 ☆☆□□□ 지원 156백만 원, 12개사 □□ □□ □□□ 161백만원, 운영비 15백만 원, 대행수수료 28백만 원으로 집행계획됨.

4) 2023 ○○○○ □□ □□ □□□의 집행계획은 161백만 원이었으나 2023. 8. 21. 160백만 원으로 변경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2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8. 협상 진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진흥원은 ‘2023 ○○○○ □□□□ □□□ 운영 용역’을 2023. 4. 25.부터 5. 8.까지 제한 경쟁입찰(경북·대구 소재)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고하였고 ◆◆◆◆◆◆의 단독 입찰로 5. 24.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를 거쳐 아래 [표 2]와 같이 2023. 6. 12.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용역 계약 체결

계약명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업체
2023 ○○○○ □□□□ □□□ 운영 용역	2023. 6. 12.	2023. 6. 12. ~ 7. 15.	160백만원	◆◆◆◆◆◆

입찰공고 시 과업내용은 중소기업 12개사 정도에 대해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상담장 임차, 현지 단체 이동 차량 지원, 통역 및 왕복 항공료 지원(1인/1개사) 등이며 주요 일정으로는 2023. 7. 6. ▲▲▲ ▲▲▲▲로 출국하여 7. 10. ~ 7. 11. 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하고 7. 14. 귀국하는 7박 9일 일정이었다.

그런데 2023. 6. 12. 계약체결 시에는 과업지시서 상 다른 과업은 동일한 채로 아래 [표 3]과 같이 지원 기업을 6개사로 수정하여 계약 체결하였고 지원기업 수가 입찰공고 시 12개사에서 6개사로 과업량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 체결하였다.

또한 ▲▲▲ 출발 전(2023. 6. 26. 이전) 1개 업체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통지하여 실제 해외(▲▲▲) 수출 상담 지원기업은 5개사로 과업량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았다.

[표 3] 과업량(지원기업수) 변경

입찰 공고시(2023. 4. 25.) 과업지시서	계약체결 시(2023. 6. 12.) 과업지시서	해외(▲▲▲) 출발 전 ⁵⁾ (2023. 6. 26. 이전)
12개사	6개사	5개사

2023. 4월에 실시한 '2023 ○○○ □□ □□ □□□ 운영 용역 원가계산'을 토대로 감소된 기업지원 수로 원가계산 재산정을 하면 아래 [표 4]와 같이 2023. 4월 실시한 원가 160,000천 원 보다 74,851천 원이 감소된 85,149천 원이다.

[표 4] 감소된 과업량으로 원가계산

구 분		원가계산(2023.4월)	적정산정	차 이
인건비	책임연구원 등 8명	8,633,169	8,633,169	-
	통역비	36,000,000	15,000,000	21,000,000
	소계	44,633,169	23,633,169	21,000,000
경비	국외여비	30,740,892	15,370,446	15,370,446
	항공료	35,443,453	13,087,200	22,356,253
	임대료,유인물등	14,716,740	14,716,740	-
	소계	80,901,085	43,174,386	37,726,699
일반관리비(5.5%)		6,904,384	3,674,416	3,229,968
이윤(9.828%)		13,016,069	6,926,968	6,089,101
총원가		145,454,707	77,408,939	68,045,768
부가가치세(10%)		14,545,471	7,740,894	6,804,577
합계		160,000,000	85,149,000	74,851,000

5) 해외 일정이 6개사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개 업체가 불참 통지. (◆◆◆◆◆◆◆ 사업비 정산서에 항공료 취소 수수료 489,300원, 2023. 6. 26. 청구)

2. 용역관리 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23. 6. 12. 계약체결 시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수행업체는 아래 [표 5]와 같이 과업착수보고, 진행상황보고(매주 금요일로 5번), 주요 이슈보고(수시)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표 5] 용역업체 사업보고 의무

구분	보고명	보고시기	주요내용	보고형식
정기 보고	과업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인력별 담당업무, 사업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	착수보고서
	진행상황보고	매주 금요일	- 바이어 모집 현황, 사전 마케팅 활동 내용,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 - 특이사항 공유	서면
	상담실적보고	당일보고	- 상담성과 및 주요 상담내용 기재	서면
	과업결과보고	상담회 종료 후 2주 이내	- 총 상담 성과, 주요 상담 내용, 참가업체 및 바이어 의견, 상담회 운영 시 특이사항, 사후관리 방안 등 해외 바이어 상담 관련 전반적인 내용 기재	결과보고서
	최종정산보고	상담회 종료 후 2주 이내	- 정산 관련 모든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정산보고서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주요 이슈	즉시	-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서면
	기타	협의사항	-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 기타사항	서면/구두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계약체결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감독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사업보고와 관련해서도 용역업체로부터 사업 착수계를 제출받은

이후 2023년 7월 ▲▲▲으로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 한번, ▲▲▲ 현지 마지막 날에 한번, 귀국 후에 한번 단 3차례의 서면보고만을 받아 용역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계약 종료일인 2023. 7. 15.까지 계약업체 ◆◆◆◆◆이 사업수행 내용을 [표 6]과 같이 완료하지 못하자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고 바이어 수출상담을 온라인으로 추가 진행하도록 하였다.

[표 6] ▲▲▲ 상담 바이어 매칭 실적

과업지시서	▲▲▲ 현지 매칭 실적(2023. 7월)
- 참여기업별 1개사 당 유효 바이어 5개 이상 사전매칭 필수 ※ 참여기업 5개사 × 5개 = 최소 25건 이상	- 바이어 매칭 실적 : 총 9건 : ●●● 3건, ■■■ 2건, ☆☆☆ 2건, ▼▼▼▼▼ ▼▼ 2건, ◇◇◇ 0건

3. 용역 검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1. 가. 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진흥원은 계약만료일인 2023. 7. 15.의 한참 후인 2023. 12. 6.에서야 변경 계약 체결을 하였는데 계약기간만 2023. 6. 12.부터 2023. 12. 31.까지로 연장하고 계약서는 2023. 6. 12. 최초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사업수행 내용에 온라인 바이어 상담과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현지(▲▲▲) 상담회 전 참여 기업당 바이어 5개이상 사전매칭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은 계약업체 이 온라인 상담을 추가로 실시하였다고 정산 보고하자 변경계약일인 2023. 12. 6. 검사를 완료하여 2023. 12. 7. 계약업체 의 청구에 따라 2023. 12. 15. 잔금⁶⁾ 80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2025. 8. 29. 진흥원 당시 검사 담당자 임회하에 연락 가능한 참여기업 5개 중 2개 기업과 온라인 상담 실적에 대해 전화로 문의한 결과 아래[표 7]과 같이 참여기업 ●●●의 경우 온라인 상담 실적이 3건이 아닌 2건으로 ◇◇◇는 9건이 아닌 3건으로 확인되었으며 ▼▼▼▼▼ ▼▼의 현지 및 온라인 상담 실적은 총 2건, ◇◇◇는 총 3건으로 참여기업 5개사 중 2개사가 5개 이상 상담 바이어 매칭 건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표 7] 온라인 상담 추가 실적 확인

스페인 현지 매칭 실적 (2023. 7. 14.)	온라인 상담 추가 실적 보고 (2023. 12.)	실적 확인 (2025. 8. 29.)
- 총 9건 : ●●● 3건, ■■■ 2건, ☆☆☆ 2건, ▼▼▼▼▼ ▼▼ 2건, ◇◇◇ 0건	- 총 20건 : ●●● 3건, ■■■ 4건, ☆☆☆ 4건, ▼▼▼▼▼ ▼▼ 0건, ◇◇◇ 9건	- 총 22건(현지 9건, 온라인 13건) ※ 온라인 상담실적 전화 확인(7건 허위) : ●●● 2건, ◇◇◇ 3건으로 확인 ※ 업체당 바이어 5개이상 충족 여부 : ▼▼▼▼▼ ▼▼ 2건, ◇◇◇ 3건으로 미충족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사후관리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인해 지원기업이 기존 12개사에서 5개사로 과업량이 현저히 줄었고 과업 내용인 참여 기업당 상담매칭 5개사 이상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검수 및 사업비 정산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6) 선금은 2023. 6. 28. 80백만원이 지급됨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체결, 감독 및 검사 등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AAA은 경징계 처분(개별 징계요구서 별첨), BBB, CCC은 훈계(진흥원 규정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예산 및 회계 규정」 제3조에 따라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라목 및 바목에 따르면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 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과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⁷⁾를 받아야 하지만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와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과 계약하는 경우 등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서 여성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서 소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19. 10. 30. 설치된 △△ △△△에 대해 철거 계약일인 2023. 3. 27.까지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등의 수의계약 사유가 없음에도 일반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와 같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 및 바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서 소기업, 여성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2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착오하여 ‘□□□ □□□□ □□□□□ □□□□ 용역’ 등 총 2건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계 약 명	계약업체	계약일자	계약금액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유
진흥원 △△ △△△ 철거 용역 ⁸⁾	◎◎◎◎◎	2023-03-27	91,000	안전사고 우려로 시기의 긴급성
□□□ □□□□ □□□□□ □□□□ 용역	☆☆☆☆	2022-10-27	59,000	여성기업
●●●●● ●●●●● ●●●●●●●●●● ●●●●● ●● 용역	◇◇◇◇◇	2025-07-28	40,000	소기업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 결과 위 계약의 과업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타 업체의 계약참여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등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의계약 등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자 AAA을 주의(진흥원 규정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③ 관련자 BBB, BBB을 훈계(진흥원 규정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출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 □□□□□□,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회계관직을 지정하고 각 회계관직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고 부여된 회계업무에 책임을 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예산 및 회계규정」 제8조, 제9조, [별표1], 「재단법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 예산 및 회계규칙」 제2조, 제5조에 따르면 원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직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직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은 직무범위에 대한 지출 원인행위, 지출원은 지출명령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관은 본부장, 분임 재무관은 각 실장으로 지정하고 있고, 지출원은 ○○○○팀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6조, 제47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

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관, 분임재무관 또는 지출원이 부재한 경우에 지출 행위를 할 때에는 원장으로부터 부재기간 동안 회계관직의 일시 변경을 득하여 변경된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의 책임하에 지출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24. 1. 1. ~ 2025. 8. 22. 기간 동안 재무관 및 지출원의 휴가, 출장 등으로 인해 부재 중인데도 정당한 회계관직의 변경없이 부적정하게 지출업무를 대리하여 총 1,115건의 지출원인행위와 총 290건의 지급명령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지출원, 재무관 등 회계관직의 업무 한계를 벗어나 지출 등 회계업무가 이루어지고 회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앞으로 지출원 등이 휴가 등으로 부재일 때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계관직을 변경하여 지출 등 회계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회계관계직원 지정 부적정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업무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예산 및 회계 규정」에 따라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관직을 지정하고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대해 재정보증보험 가입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회계관계직원 지정 부적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V.예산 집행기준 ⑤ 기타에 따르면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재무관은 회계업무담당국장, 분임재무관은 회계업무담당과장으로 지출원은 지출업무담당으로 되어 있고 같은 훈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재무관은 본부장으로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지출원으로 회계관직 지정하여야 하고 재무관·지출원은 겸직할 수 없으므로 ○○

○○팀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예산 및 회계규정」 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각 실장으로 지정하여 □□□□□실장, △△△△△실장, ◇◇◇◇◇◇◇◇◇◇◇◇이 계약 시 원인행위를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아 사업담당자가 각각 계약 행위를 하고 있다. 그 결과 계약의 전문 지식이 없는 사업담당자 67명이 2022. 7. 6.부터 2025. 7. 31.까지 총 54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업무 소홀

진흥원 「예산 및 회계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진흥원의 예산·결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 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예산 및 회계규정」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진흥원의 예산·결산 및 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계관직을 회계책임관, 징수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무관, 분임재무관 등을 두며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진흥원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재정보증보험 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회계관직을 부여받은 자와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대해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재정보증보험에 한도액 2,000만원으로 가입토록 해야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표]와 같이 회계책임관 ☆☆☆ 본부장 등 5명만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분임재무관인 □□□□□□실장, △△△△△실장을 포함하여 실제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재정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재정보증보험 가입 현황

(단위 : 천원)

대 상	성명	가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비 고
회계책임관, 재무관	☆☆☆	2025. 5. 22. ~ 2026. 5. 21.	20,000	
통합지출관, 지출원	●●●	2025. 5. 22. ~ 2026. 5. 21.	20,000	
지출담당자	◆◆◆	2025. 5. 22. ~ 2026. 5. 21.	20,000	
지출담당자	▲▲▲	2025. 5. 22. ~ 2026. 5. 21.	20,000	
지출담당자	▼▼▼	2025. 5. 22. ~ 2026. 5. 21.	20,000	

그 결과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진흥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앞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회계관계직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계약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인사규정」, 「직제 및 정원규정」 등에 따라 직원의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과 관련된 인사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IV.조직과 정원 운영 가.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원칙에 의하면 조직과 정원에 관한 내부규정에는 조직별·직급별 정원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정원과 현원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직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 순으로 승진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직급별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 인력 관리계획 등 인사변동 인원을 면밀히 확인하고, 정원과 현원을 일치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직급별 정원을 초과한 승진임용이나, 승진임용 대기자가 있는데도

다시 승진임용 심사를 진행하는 등의 체계적이지 못한 인사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진흥원 경영기획본부 ○○○○팀에서는 [표]와 같이 2023. 2. 8. ‘2023년 인사추진일정⁹⁾’을 공지하면서 직급별 정원대비 결원이 10명(2급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5명) 인데도 불구하고 예상결원을 포함한 총결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채, 인사 요인을 사무 7→6급 5명으로만 게시하였고, 2023. 2. 9. ‘2023년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팀-630, 2023. 2. 9.)’을 통해 이와 동일하게 결정한 후, 2023. 2.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결원 직급에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급 AAA 등 5명 만을 6급으로 승진임용 하였으며, 이후 2023. 9.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인사에서 누락 된 ☆☆☆급 BBB 등을 포함한 15명을 승진 임용하였다.

그 결과 부적정한 인사 운용으로 인해 직급별 결원 총 5명에 대한 승진이 누락 되었고, 해당 직급을 장기간 결원으로 유지한 채 기관을 운영한 결과를 초래 하였다.

[표] 진흥원 직급별 정원대비 결원에 따른 승진인원 현황

구분 (인사위원회)	결원 인원	승진요인	승진임용	비 고
‘23년 상반기 (2023. 2. 9.)	2급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5명 ※ 7급 5명 과원	- 총 20명 • [기술] 3→2급 : 1명(결원 1) • [사무] 4→3급 : 1명(승진후속 1) • [사무] 5→4급 : 3명(승진후속 1, 결원 2) • [사무] 6→5급 : 5명(승진후속 3, 결원 2) • [사무] 7→6급 : 10명(승진후속 5, 결원 5)	- 총 5명 • [사무] 7→6급 : 5명	
‘23년 하반기 (2023. 9. 5.)	2급 1명 4급 2명 5급 2명	- 총 15명 • [기술] 3→2급 : 1명(결원 1) • [사무] 4→3급 : 1명(승진후속 1) • [사무] 5→4급 : 3명(승진후속 1, 결원 2) • [사무] 6→5급 : 5명(승진후속 3, 결원 2) • [사무] 7→6급 : 5명(승진후속 5)	- 총 15명 • [기술] 3→2급 : 1명(결원 1) • [사무] 4→3급 : 1명(승진후속 1) • [사무] 5→4급 : 3명(승진후속 1, 결원 2) • [사무] 6→5급 : 5명(승진후속 3, 결원 2) • [사무] 7→6급 : 5명(승진후속 5)	

※ 출처 : 진흥원 「직급별 정원규칙」 및 승진 인사요인 기준 관련(기술직과 사무직은 통합하여 운영)

9) 2023. 2. 8. 사내 게시판의 공지사항에 ‘2023년도 승진인사 추진일정 안내’ 게시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급별 정·현원 관리와 직원 승진인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주의)
- ② 관련자 CCC은 주의(진흥원 규정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및 시 정

제 목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본부 ○○○○팀에서는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붙임]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 31명 및 계약직 근로자 41명을 채용하였다.

1.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미이행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제2장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채용계획은 기관의 인력현황 및 예상결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채용시기, 채용방법, 응시자격, 전형별 합격기준 및 합격인원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채용계획은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경상북도 감독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채용에 대한 계획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채용계획을 확정하여 직원 채용을 추진하였다.

2. 채용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소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공직자¹⁰⁾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와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벌금형의 선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간 공공기관¹¹⁾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하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 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및 범죄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채용된 직원에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및 범죄사실 증명서를 징구하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정규직 근로자 채용

10)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의거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공직자의 범주에 포함

1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의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

합격자 31명에게 임용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결격사유에 대한 ‘신원조회 문답서’만 징구하고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계약직 근로자 41명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 중 공공기관 채용 이력이 있는 13명에 대하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를 일부만 확인하였으며,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중 공공기관 채용 이력이 있는 11명에 대하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만 징구하고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를 관련 기관에 확인하지 않는 등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의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위 사실로 인해 진흥원에서는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에 위배하여 채용절차가 추진되었으며, 채용된 직원의 결격사유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임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 ① 직원 채용 시 「기타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채용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채용 직원에 대한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및 범죄사실조회서를 징구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시고, 공공기관 채용 이력이 있는 직원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여부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은 주의(진흥원 규정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흥원 직원 채용현황(2022.7월 ~ 2025.7월까지)

“생략”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관	계	부
내	용	서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직원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공무국외출장 처리규칙(이하 ‘국외출장규칙’이라 한다.)」을 두고 소속직원의 복무원칙 및 국외 출장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1. 겸직 허가 관리 부적정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흥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도 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흥원 「정관」 제6조, 제8조에 따르면 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소속 임직원이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경우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원의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임직원이 겸직 허가를 받아 활동하여야 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외부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감사기간 내 [붙임]과 같이 총 39건에 대해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한 사실이 없다.

그 결과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 여부, 부당한 이해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겸직허가 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 공무국외 출장관리 부적정 관련

진흥원 「공무국외출장 처리규칙(이하 ‘국외출장규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신청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사전검토 의견서를 최소 출장 실시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장은 심사제외사항¹²⁾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결과를 확인한 후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출장목적지의 적합성,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격성,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합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소속 직원이 위·수탁 사업 예산의 출장이나, 국제회의·행사 참석 등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이 아닌 진흥원 일반운영비 등 자체예산으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 실시 1개월 전에 출장 계획을 주관부서인 ○○팀에 제출하여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원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 출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감사 기간 내 국외 출장 심사 제외

12) 1. 법인 외의 기관·단체로부터 자금을 받아 수행하는 위수탁사업의 계획에 출장목적과 예산이 반영된 공무국외출장, 2. 국제회의·행사 참석 등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총 10건(8명)의 국외 출장건에 대해 공무 국외 출장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국외출장을 허가한 사실이 있다.

**[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미심사 국외출장 현황
“생략”**

그 결과 국외 출장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어 예산 낭비 또는 목적 외 집행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앞으로 외부위원 활동의 경우에도 사전에 겸직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시고, 공무국외 출장 심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재단 규정을 엄밀히 준수하시는 한편, 현재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잔여 기간이 남아 있는 외부위원 활동건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붙임]

겸직근무 허가 없이 외부 위원 활동 현황
“생략”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업규칙 등 규정관리 미흡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진흥원 「취업규칙」,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직원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고 각각 근로기준법상 필수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취업규칙 필수 근로 사항 미비 관련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¹³⁾을 규정한 취업규칙¹⁴⁾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13)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14) 취업규칙이란 다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집단적·통일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함(대법원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등)

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한 「표준취업규칙」을 배포하여 각 사업장에서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그 기준에 맞게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여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규모나 업무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표준취업규칙의 관계법령상 필수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진흥원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조직 및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에 관한 사항 등 근로기준법상 필수적 근로조건이 누락되어 있다.

그 결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핵심 조치 보장이라는 관련 법령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

2. 징계의 효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및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진흥원 「인사규정」 제28조에서도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흥원 「보수규정」 제3조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진흥원 「인사규정」에 배치되지 않도록 정직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직원의 그 정직 기간 동안에는 봉급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수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 「보수규정」 제13조 및 [별표4]에 따르면 정직 기간 중에도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3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인사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정직을 받은 직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근로기준법상 필수적 근로조건을 반영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하시고, 정직 등을 받은 직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은 진흥원 「공무국외출장처리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 국외 출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 교통을 통한 공무 국외 출장 시 항공사로부터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 받고 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직원복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은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진흥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흥원 「여비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진흥원 임·직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¹⁵⁾(이하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5) 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 근무지의 국내출장시의 여비에 따르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자신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지침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 점수 또는 현금 구매 절차 및 구매 기준¹⁶⁾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 임직원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취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에 대해서는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하는데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의 절차에 따라 자신이 적립한 공적항공마일리지를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진흥원 직원 △△△급 AAA은 2024. 4. 30. ○○○○항공 마일리지 몰에서 물품 구매 시 ○○○○항공 적립 마일리지 14,900마일을 사용하면서 개인이 적립한 11,205마일 외에 당시 총 적립된 본인의 공적항공마일리지 34,860마일 중 진흥원 으로부터 별도로 구매한 사실이 없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3,695마일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공적 항공마일리지라는 공적 자원이 정당한 절차없이 무단 사용되었고 또한 이를 식별하고 점검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① 앞으로 공적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을 관리하여 무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16)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항공마일리지가 3만을 초과하는 구간은 1마일당 20원, 3만 이하인 구간은 1마일당 10원으로 하되, 구매시 3만 초과 구간분부터 먼저 환산·적용한다.

하시고, 부당 사용한 마일리지 3,695마일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에 따라 환산 적용한 금액 73,900원을 복지점수로 구매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환수하시 바랍니다.(시정)

② 관련자 AAA은 훈계(진홍원 규정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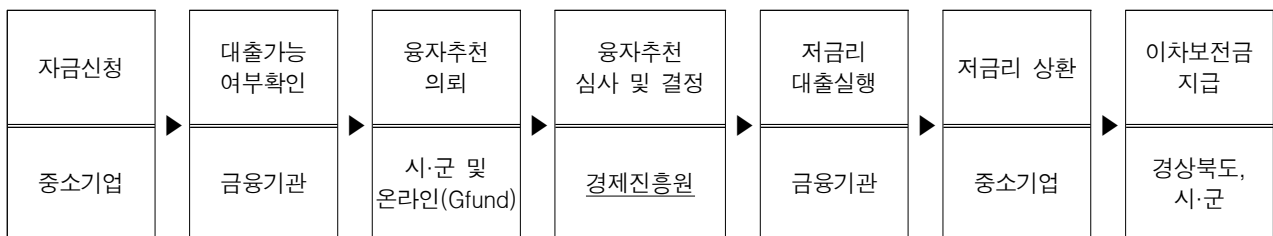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 ○ ○ ○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등에 따라 [그림]과 같이 관내 중소기업이 경영 안정,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이하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자격이 되는지 등을 심사하여 자금 지원을 승인¹⁷⁾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분기별로 그 이자의 차액을 보전(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¹⁸⁾하고 있다.

[그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심사 및 이차보전금 지급 절차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상

17) 이와 별도로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체 신용·담보가액 평가 등을 통해 대출 여부 및 금리 등을 결정

18)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의 4%(2025년 기준)를 보전 해주는 것으로 시·군별 0.5~3.0% 상당의 이자를 추가 보전

북도가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이하 ‘융자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운전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지원 신청일 현재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운전자금의 경우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이하 ‘지원심사 업무’라 한다) 되어 있다.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¹⁹⁾」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진흥원에게 융자지원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를 위탁하며, 진흥원은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심사하고, 융자지원 대상기업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항을 경상북도, 신청기업, 기금관리은행, 대출취급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전산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요청한 기업에 대한 지원심사 업무를 할 때,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 등을 국세 또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와 전년도 대출관련 이력 통해 확인하고, 문제점이 없을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을 승인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심사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 중소기업육성실은 [붙임]과 같이 2022. 5. 10.부터 2025. 7. 7.까지 접수된 총 190건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에 대해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53,968,000천 원의 대출금액을 승인하고, 이차보전금 1,382,735,015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2025. 2. 21. 중소기업육성자금(벤처기업육성자금 100,000천 원)을 신청한 (주)△△△△(대표 : ○○○○)가 등록면허세 21천 원을 체납(체납

19) 2015. 5. 4. 경상북도는 진흥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259,000천 원을 진흥원에 지급

일 2025. 2. 1.)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5. 2. 21. 벤처기업육성자금을 부적절하게 승인하였다.

또한, [표]와 같이 신청일 기준 전년도 운전자금 대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 등 3개 기업에 대하여 총 650,000천 원의 대출금액을 승인하고 이차보전금 13,449,884원을 부적절하게 지원을 승인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심사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대출일 1년 경과 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승인한 명세

(단위 : 원)

연번	기 업 명 (대 표 자)	전 년 도 대 출 일	당 해 년 도 신 청 일	지 원 금 승 인 일	대 출 금 액	이 차 보 전 금 지 원 액
계	3건				650,000,000	13,449,884
1	(주)☆☆☆☆ (●●●●)	2022. 8. 25.	2023. 1. 16.	2023. 1. 20.	300,000,000	10,496,460
2	△△△△ (■ ■ ■ / ▲ ▲ ▲)	2024. 5. 31.	2025. 5. 26.	2025. 6. 11.	150,000,000	213,698
3	◇◇◇◇ (◆ ◆ ◆)	2024. 1. 22	2025. 1. 15.	2025. 2. 6.	200,000,000	2,739,726

※ 출처 : 진흥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내역 제출 관련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은 주의(진흥원 규정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흥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기업 세금 체납여부 미확인 현황

“생략”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2023. 3. 23. 구미시로부터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대표자 변경 신고(30일 이내) 미이행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1,000,000원의 처분을 받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는 대표자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4]에 따라 1차 위반시에는 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고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감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진흥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은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 및 회계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원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대표자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과 관련

하여 대표자 변경을 구미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공운영비 등 예산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22 .10. 19 대표자 변경이 되었으면서도 고압가스냉동 제조시설과 관련한 대표자 변경을 구미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2023. 3. 23. 구미시로 부터 과태료 1,000,000원의 처분을 받았고 2023. 4. 6. 공공운영비로 납부하였다.

그 결과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납부할 수 없는 과태료 1,000,000원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 ① 관련 직원으로부터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납부된 과태료 1,000,000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관련자 AAA은 **훈계**(진흥원 규정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진흥원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 건물의 유지 보존을 위한 수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6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시공하는 공사의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소관 건물의 유지·보존을 위한 수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공사의 내용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 내용인지 확인하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면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사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체결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 방수공사” 등 총 3건의 건물 수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해당 공사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이고, 공사예정금액인 1천 5백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해당 공사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공사를 계약·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건설업 미등록 업체의 공사 현황

(단위 : 원)

업종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계	3건	57,459,60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 방수공사	18,818,800	2024.4.1.~4.1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방수공사	18,730,800	2025.4.1.~4.21.	◇◇◇◇
실내건축공사업	▼▼▼▼ 교체공사 (▽▽ 및 ○☆☆☆)	19,910,000	2024.11.9.~11.23.	◎◎◎◎

그 결과 해당 분야의 법적 역량이 입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시공 품질 미흡 가능성이 존재하고, 계약이 불가능한 무자격 업체인 공사 업체가 특혜를 입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 ①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AAA은 훈계(진흥원 규정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